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9. 8. 6
- 나. 제출자 : 사천시장
- 다. 회부일자 : '99. 8. 6(의안 제37호)
- 라. 상정일자 : 제37회사천시의회의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99.8.12상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99.4.9)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창고시설,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66㎡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며,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함.(안 제3조제2항)
- 나. 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후의 층수가 3층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함.(안 제3조제2항)

4.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가.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등을 완화하는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본회의 부의하기로 함)